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1 주요개정 내용

1. '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제도개선 관련

노인·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 단,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기준 적용

주요 변경내용

- 5)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나)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1) 적용대상 요건
- 수급(권)자 가구 요건
 - 65세이상 노인을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노인이 아닌 가구원 포함한 해당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해당가구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해당 가구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834만원 이하인 경우
 -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선정시 반영되는 차감·제외항목(교육비, 의료비 등) 미반영
 - (재산기준)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 (2) 적용대상 급여
-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 폐지)
- (3) 유의사항
- 해당 노인·한부모가족의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친정부모)인 경우, 일반 수급자의 혼인한 딸에게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주거용·일반 재산 고려 ×, 금융재산 2억 미만) 적용 하지 않음
 - ※ 기존 수급자는 탈락이전까지 기존 기준 적용 가능
 - 해당 수급(권)자 가구의 부양의무자는 공적자료로만 조사하며,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등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 가능

2. 기타 재산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① 자동차 기준 완화

현행	개정(안)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생계·의료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주거·교육 (승용) ①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자동차 -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② 가구원이 6인 이상 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승합·화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표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참고1**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지급 기준****□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년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21년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 급여종료별 선정기준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 (30%)	527,158 548,349	897,594 926,424	1,161,173 1,195,185	1,424,752 1,462,887	1,688,331 1,727,212	1,951,910 1,988,581	2,216,915 2,249,159
의료급여 (40%)	702,878 731,132	1,196,792 1,235,232	1,548,231 1,593,580	1,899,670 1,950,516	2,251,108 2,302,949	2,602,547 2,651,441	2,955,886 2,998,879
주거급여 (45%)	790,737 822,524	1,346,391 1,389,636	1,741,760 1,792,778	2,137,128 2,194,331	2,532,497 2,590,818	2,927,866 2,982,871	3,325,372 3,373,739
교육급여 (50%)	878,597 913,916	1,495,990 1,544,040	1,935,289 1,991,975	2,374,587 2,438,145	2,813,886 2,878,687	3,253,184 3,314,302	3,694,858 3,748,599

□ 장기입원에 따른 생계급여 공제표

가구규모 입원자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1인당	255,460	215,800	185,600	170,380	160,930	154,400	149,690